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축산시설 악취관리 규제 일원화〉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80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축산시설 악취관리 규제 일원화	3
※ 참고자료	10
1.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10
2. 「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	12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세부사항	15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20일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축산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이면서,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됨.

이때 축산시설 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해당 관리기준에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게 설정되어, 관리자에게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신고대상시설에 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비해 현행법은 모든 축산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시설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등).

Ⅲ. 검토의견

1. 축산시설 악취관리 규제 일원화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규제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처분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제5항, 안 제53조제2항제5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 ③ (생략)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u>관리기준</u> 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 ----- ---- <u>관리기준 및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u>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 ----- <u>제4항</u>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 ----- ----- ----- ----- -----.

제5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③·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17조¹⁾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²⁾(이하 “배출·처리시설”이라 함) 설치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배출·처리시설이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배출·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이행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④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⁴⁾, 제18조의²⁵⁾ 및 제50조⁶⁾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사용 중지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됨.

한편, 현행법 제17조제4항에 규정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은 배출·처리시설에서 발생·생산하는 가축분뇨, 퇴비, 액비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관리기준 중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의무가 포함됨.⁷⁾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동법 시행규칙 별표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1. ~ 8. (생략)

9.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0.· 11. (생략)

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1.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및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로서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7) 관리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6) 및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참고자료1, 참고자료2로 후술.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배출·처리시설의 95.5%⁸⁾가 「악취방지법」 상 악취배출시설⁹⁾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배출·처리시설이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상 관리기준인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동시에 두 개의 법률에 따른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함.

두 개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개선명령 이행기간, 미이행시 행정처분·형벌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각각 다른 처분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어떤 법률에 따른 제재 처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상 처분 비교]

분류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축산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그밖의 악취배출시설
목적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과도한 악취발생 방지	
대상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중 기준 규모 이상인 시설 (돼지50㎡, 소100㎡, 닭200㎡ 등)	①악취관리지역 ②악취민원 1년 이상 지속 & 배출허용기준 3회 초과	사육시설 면적이 기준 규모 이상인 축산시설 (돼지50㎡, 소100㎡, 닭150㎡ 등)
시설수('22년)	93,444개소	139개소	89,141개소
위반행위	배출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	

8) 2022년 기준 가축분뇨법 적용 대상 축사 93,444개소 중, 악취방지법 적용 대상 축사 수는 89,280개소임(약 95.5%).

9)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에는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이상인 시설이 포함됨.

분류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축산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그밖의 악취배출시설
행정처분		개선명령 → (미이행 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 ※ 이행계획 제출 의무 아님	개선명령 → (미이행 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 ※ 이행계획 제출 의무 있음	개선권고 → (권고 미이행 시) 조치명령 →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 이행계획 제출 의무 있음
개선명령 (조치명령) 기간		3개월 (3개월 연장)	1년 (6개월 연장)	6개월 (3개월 연장)
벌칙· 과태료	기준 초과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없음	과태료 없음
	명령 미이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 : 환경부

예를 들어, 「악취관리법」 상 신고대상시설인 배출·처리시설이 악취 관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최대 6개월의 이행 기간을 거쳐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6개월 이내 사용중지 처분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형벌이 가능하나,

「악취방지법」에 따를 경우 악취 개선 명령의 이행 기간은 「가축분뇨법」보다 장기간인 최대 1년 6개월이고, 미이행 시 개선 완료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업 정지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처분권자가 선택하는 제재 처분 근거에 따라 이행기간, 제재 처분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예측 가능성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한편, 처분의 예측 가능성 문제와 더불어 「가축분뇨법」상 처분 기준이 「악취방지법」에 비하여 축산 농가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음.

예컨대,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배출·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개선명령·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의 사용 중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등, 「가축분뇨법」상 처분 기준이 보다 엄격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규제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규제 대상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기준에서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분리하고, 배출·처리시설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악취방지법」에 따른 처분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1년 6개월의 개선 명령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미이행하더라도 농가에 부담이 되는 사용 중지 처분 대신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지므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부는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은 제정 목적과 관리 대상이 달라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가축분뇨법」의 개선명령 규정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두 법

의 관리 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어 관리 공백¹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546

10)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93,444개소이나, 「악취방지법」의 관리대상인 축산시설은 89,280개소임.

※ 참고자료

1.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 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처리시설 운영,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생산되는 퇴비·액비,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 가. 측정자 또는 검사자

- 1)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의 방류수수질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영 별표 3의 퇴비액비화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3) 법 제13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나. 측정주기 또는 검사주기

1) 정화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2) 퇴비·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0.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11.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는 발생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2. 「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3)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1.2.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회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회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 (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 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세부사항(시행령 제7조)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6.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